



서울메트로



수신자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**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안내**

1. 관련근거

- 국민권익위 심사기획과-75호(2016.1.11) “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협조 요청”
-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, 제83조, 제89조
-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89조, 제90조
-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사무운영지침(국민권익위 예규 제79조)

2.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의 공공기관 재취업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에, 동 제도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, 부서장께서는 소속 직원들이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, 안내문 게시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주요내용

○ 제도 의의

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**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**된 경우에 공공기관 및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**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**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에 퇴직일부터 **5년간 취업을 제한**하는 제도

- **제도 목적** : 부패행위의 경제적·사회적 비용 가중을 통한 부패발생 예방
- **위반시 제재** : 위반자의 해임 요구 및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(기관)

※ 세부사항은 비위면직자취업제한 안내문 (붙임 #2) 참조

붙임 1. 관련문서(권익위)

2.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안내문 1부. 끝.

서울메트로사장

수신자 가1-19, 나1-3, 다1-3, 라1-16, 마1-13, 바1-8

과장 **신순임** 부장(업무대행) **휴가** 팀장(업무대행) **이택수** 감사실장 **전결 01/13**
장상덕

협조자

시행 감사실-181(2016.01.13.) 접수 ()

우 06693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(방배동) / www.seoulmetro.co.kr

전화 5752 전송 5819 / topcloud33@seoulmetro.co.kr / 대시민공개